조 례

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336회 정례회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를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손 병 화 (인)

2026년 11월 25일

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849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인사청문대상자”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.
2. “인사청문요청안”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

다)이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.

제3조(인사청문 대상 직위)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제1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직위”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
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

제4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)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 또는 개선(改選)한다.

④ 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⑥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5조(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)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직업・학력・경력에 관한 사항

2.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병역신고사항

3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

4. 최근 5년간의 소득세・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

5.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

제6조(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)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경우 본회의에 즉시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7조(인사청문의 방식 및 기간)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・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・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,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로 한다.

④ 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질의 등)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

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(冒頭)발언을 청취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. “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.”

③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 및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, 질의를 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.

④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,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제9조(증인 등의 출석요구)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인사청문 경과보고)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(이하 “경과보고서”라 한다)를 의장에게 제출

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경과보고서 송부 등) ① 제10조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.

제12조(자료제출요구)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관계기관·단체에 대하여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검증)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.

제14조(인사청문회의 공개) ①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군사·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
3.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

4.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

5. 그 밖에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·증인·참고인 등이 답변이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그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.

제15조(답변 등의 거부)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·외교·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.

② 인사청문대상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거부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
제16조(제척과 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2.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7조(주의의무) 위원과 인사청문에 참여한 사람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인사청문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8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